제2935호 2022, 7, 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47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 (02)3396-4951 / FAX (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771						
공담						



제2935호 23-2 2022. 7. 1.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47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21. 12. 16.)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으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상향 법제화되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명절기간 선물 가액 범위 상향[별표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2.16.)으로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10만원→20만원) 상향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 고 조항 및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5, FAX : 02-3396-9015, e-mail : min01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공무원	<삭 제>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	
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	
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	
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	
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	
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 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자
- 나. 구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 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 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2935호 23-2

⑥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삭 제>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	
여야 한다.	
 제9조 (직무 관련 영리 행위등 금지) ① 공	<삭 제>
	\ \ \ \ \ \ \ \ \ \ \ \ \ \ \ \ \ \ \
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	
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	
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	
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	
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	
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또	<삭 제>
MIDエ(ハラ Mを Mを) ① 1 8 3 年 丁 エ	N'∃ / /

제2935호 23-2	2022. 7. 1
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	
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	
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	
원을 포함한다)은 구에 자신의 가족이 채	
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	
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	
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삭 제>
구 또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	
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또	
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	
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	
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	

는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

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

제2935호 23-2

는 행위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미리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 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제21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 제>
공무원은 청사·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	
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전리 자동으로 제공되는 항공비들다자,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	
니 된다.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	
세 등을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	
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u>서면</u>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2.)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삭 제>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	
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	
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네 ㅊ 미글모중에 한번 합편] 제2소제1오 	

2022. 7. 1.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 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 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 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 (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 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 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 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 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 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 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 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 다.
-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	_	_	 	 	_	-	_	_	_	_	_	_	-	_	-	_	_	 _	_
 -	-	 -	-	-	_	_	 	 	_	_	_	_	-	_	_	_	_	_	-	-	_	 _	-
 -	-	 -	_	-	_	-	 	 	_	_	_	_	-	-	-	_	-	_	-	-	-	 _	-
 _	-	 -	-	-	_	-	 	 	_	-	_	-	-	-	-	-	-		-	-	-	 _	-
 -	-	 -	_	-	-	-	 	 	_	_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u>10만원</u>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u>
	<u>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u>
	<u>른 기간 중에는 20만원)</u>
<신 설>	<u>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u>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
	<u>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u>
	<u>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u>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
	<u>과해서는 안 된다.</u>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 제>
[[필시 제3호 시작] 사석 이해된게 선고시	<u> </u>

(병지 제3호사비) 사점 이해관계 신고서 최수보호 성명 소속 신고인 작위(격급) 직무 권한 업무 소급 등, 6, 제약, 7, 경착사업 등의 결정 또는 점향, 8, 기타) 성명 주소 작무관리자 선막체 전대, 자신, 2, 배우자와 4흔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계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일직원 또는 나회이사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교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8, \$ 속수존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보 및 일 신고인 선명 등 성공 또는 원이 보는 당시 등, 8, 4명 또는 명한 등을 받았던데 등, 8, 8, 10만 등에 등, 8, 10만 등에 등, 8, 10만 등에 등을 받았던데 등, 8, 10만 등에 등을 받았던데 등, 8, 10만 등에 등을 받았던데 등, 10만 등에 등을 받았던데 등을 받았던데 등을 받았던데 등을 받았다면 등을 받았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점수법	정명 소속 지위(작급) 전무 전기 (1. 만원, 2. 인가하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제결, 결정 등, 5. 장집, 권무 권한 업무 소점 등, 6. 계약, 7. 정확사업 등의 결정 또는 검행, 8. 기타) 전명 주소 지무관한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훈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제작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일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를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및 일 신고인 (서명 로논 인)	[별지 제3호서식	1	나저 이란만에 시크 나
선고인 - 소속 - 작무(작급) - 작무 (1, 만원, 2, 인가취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제품, 결정 등, 5, 정립, 관련 업무 소급 등, 6, 제약, 7, 정택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경명 - 주소 - 작무관련자 - 연락처 - 전략처 - 관계 -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지, 2로 자물 가족이 살펴보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입지 말로 도부 사회에서로 재적 범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입지 말로 모두 제품 또는 그라한 역할 하는 범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변 및 일 - 신고인 - 선고인 - 선고인 - 선고인 - 선고인 - 선금 드 인	선명 선명 소속 직위(지급) 직무 (1, 만원, 2, 인가위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정집, 관련 업무 소립 용, 6, 제약, 7, 정착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성명 주소 적무관련자 연락처 전 (1, 자신, 2, 배우자와 4분 이내 친독, 3, 2년 이내에 제작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직원 또는 사외에서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등,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로 제공 또는 그라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및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집) 변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	점수비호		
신고인 작위(직급) 작무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생명 주소 작무관련자 연락처 신기 자신, 2. 배우자와 4은 이내 한독,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안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업계로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업계로 또는 사회이사로 제직 법인 또는 단체, 등, 6.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선 및 및 선고인	신고인 작위(직급) 작무 권한 업무 전무 권한 업무 전명		성명	
작위(작단) 직무 (1. 민원, 2. 인가하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제결, 감정 등, 5. 장집,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확사업 등의 감정 또는 집행, 8. 기타) 정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원계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작원 또는 사회이사로 제작 발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입작원 또는 나회이사로 제작 발인 또는 단체, 등, 8.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작위(작군)		소속	
작무 전 (1. 민원, 2. 인가하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정집,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확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경명 주소 작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전목,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범인단체 등, 4. 자선 또는 가족이 일찍원 또는 사회이사로 제작 범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교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범인단체 등, 8.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무 전 (1, 민원, 2, 인가하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정입,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택사업 등의 결정 또는 경향, 8, 기타) 성명 주소 역약체 전에 (1, 자신, 2, 배우자와 4은 이내 천목,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선 또는 가족이 일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교문자를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축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보 및 실고인 (서용 또는 현)	신고인	직위(직급)	
주소 작무관련자 연락처 (1. 자신 2. 배우자와 4층 이내 천축,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범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일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범인 또는 단체, 5. 자선 또는 가족이 인데, 교문자란 제공 또는 그리한 역할 하는 범인-단체 등, 6.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략처 (1. 자신, 2. 배우자와 4분 이내 천폭, 3. 2년 이내에 재막하였던 법인 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득이 입작한 또는 사회에서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득이 이렇고 모든 사회에서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등, 5.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서의 또는 인) (서의 또는 인) (서의 또는 인)		직무	(1, 민원, 2, 인가역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작무관련자 연락처 (1. 자신, 2. 배우자와 4흔 이내 찬족, 3. 2년 이내에 제작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점한 또는 사회에서로 제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입점한 또는 시회하여 대한 또는 다시 등, 8.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형 또는 인)	역단체 전면체 전대 자신, 2. 배우자와 4은 이내 전략, 3. 2년 이내에 재작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득이 임직원 또는 사회에서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득이 임직원 또는 나회에 여덟 하는 법인-단체 등, 5. 축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및 및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		성명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안단체 통, 4. 자신 또는 가족이 일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자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안단체 종, 8. 축수관계사업자, 7. 기타) 천고자료 선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 자신, 2. 배우자와 4분 이내 천속,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배안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일직된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 범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데리, 교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범인단체 등, 8.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및 및 신고인 (서용 또는 명)		주소	
문.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작원 또는 사외이사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따라, 고문자로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안단체 등, 5. 복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월 월 신고인 (서용 또는 만)	용.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작원 또는 사회이사도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로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북수군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변 월 월 신고인 (서용 또는 한)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	직무관련자	연락처	
년 월 일 신교인 (서림 또는 만)	변 월 월 생교인 (서명 또는 만)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		관계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입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선교인 (세형 또는 한)	변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 <삭	참고자료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배정 등 조치 신청서				

າດດ	7	1	
122.	/.	Ι.	

제2935호 23-2

[별지 제4호서식			메워 등 구취 시호	d i i
점수번호	이에는	알게자의 역구 제 점수일	배정 등 조치 신청	5 41
	성명	H 1 L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적무 관련 정집, 소집	업무(1, 민원, 2, 인가치 등, 6, 계약, 7, 정책사	h가 등, 3. 수사, 감사 등, 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4. 재결, 결정 등, 5. 기타)
신청 원인	등, 4. 자	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	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여 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 1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는 단체, 5. 자신 또는
참고 자료				
				년 월 일
		9	<u></u> 보고인	(서명 또는 인)
<u>○○기관</u>	귀중			
[별지]	제5호	5. 서식] 의	<u></u> 견서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	
성 명	-
	-
직 위(직 급)	-
담당업무	_
의 견	
	_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50m/m/(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 <삭 제>
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1 11 11 0 0 1 12 0 1	

2022. 7. 1.	제2935호	23-2
2022. /. 1.	/11/23/J.S.	23-2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 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신청 원인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번이다체
	등, 4, 자신 가족이 대리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X ,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대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7. 기타)		
참고 자료			
			년 볼 일
00기관	귀중	신청인	(서평 또는 인)
50412	-10		
벽지	제7ㅎ	. 서식] 사적 이혀	
왹인.	오시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1	
	사적 (기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 · · · · · · · · · · · · · · · · · ·
ALD FIEL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	직위(직급)	
	연락처	
	적무 관련 정집, 소집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시항	등, 4, 자신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전독, 3. 2년 이내에 제작하였던 별인단체 또는 가족이 일찍원 또는 서외이사로 제작 법인 또는 단체, 5. 지신 또는 1.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안단체 등, 8. 특수관계사업자.
확인 시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작산입니다 (건)
[별지]	제8호	도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
야 업	무활	동 내역서

제2935호 23-2

	관단체 등				
기간	근무채(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던 사업 또는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즈	r성일자 : 20 .		신고자 :	(인)
धीरी र	10 ठं ≀-	13]] E];	X]Xlolo	미고다	접촉 신
	미크로 스	['4] H	ㅋ시커=	4 MA	입국 신
고서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통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속		직위(직급)	
신교인	직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		4 대격 경쟁 등 5 집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	는 집행, 8, 기타)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임시	307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 		€,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7	데 15 <u>.</u>	호 서식] 직무	관련지	- 등과의 거
래 신	고서			
71 12	-E-/-I			

제2935호 23-2 2022. 7. 1.

[별지 제15호서스	i)					
		피러지 등	등과의 거리		ı	
	식무	완던사 등	하나의 기대	배 신고/	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IXI-	
신고자	성명	소속	f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8 [] 금전 대부					
	성명			연락처		
거 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f 1 x 0 x	런자(이었던 자)	118000	변공무원(일직원)(이	INN III
직무관련 업무	인고사자의 단계	T1 ALE	단시(이끄는 시)	[] 4+6	D2-21246114	125 40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	사 계약	
	성명			연락처		
거 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리	면자(이었던 자)	[] 직무건	rਰ공무원(임직됨)(G	기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지						
	성명		연락처			
거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취무관	현자(이었던 자)	[] 작무관	현공무원(합직원)(이	(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기대전단						N 61
		신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聚소통	명자료 침부	